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06. 1. 22)

1. 농지보전부담금제도 개편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57조, 별표 2)

- 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단위(㎡)당 금액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정함
 -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30%×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로 부과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도 도입
 -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상한금액)이상인 때에는 그 금액으로 부과
 - * 상한금액 : 5만원/㎡(농림부장관이 별도 고시)
- ② 주요산업시설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
 - *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설치하는 경제자유구역(50%), 지방이전 공공기관(50%), 33㎡ 미만의 주말·체험영농주택(50%) 등
- ③ 농지보전부담금 신규 감면시설에 대한 감면유효기간 적용
 - * 신규감면시설에 대해 감면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추후 감면 필요성 및 감면 수준을 Zero-Base에서 검토

(2)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보완(제55조·57조의2 내지 57조의4)

- ①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시 예치하는 보증서 범위 확대
(현행) 보험업자가 발행한 보험증권 →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 ② 지자체의 농지보전부담금 취급수수료 현실화(5%→8%)
 - * 환경·건교·산림 등 다른 분야의 부담금 취급수수료 사례 참조
- ③ 농지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 채납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무재산 등

2 농지의 취득·이용 및 전용제도 개선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제10조)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하도록(4일→2일) 완화
 -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 주말·체험영농농지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단축 가능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 확대(제11조의2)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자발적 휴경사유를 추가
 -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 재배 전후에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5) 농지전용허가기준 등 정비(제38조 · 제49조)

- ① 농지전용허가시 적용하는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완
 - * 허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 및 근거를 제시
- ②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생산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
 - * (현행) 농지전용면적 제한 : 7단계 → (개정) 5단계
 - * 개정된 농지전용허가 제한 시설은 2006년 1월 22일 이후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2006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등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일자에 관계없이 현행 농지전용허가제한 시설을 적용

(6) 축사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별표 1 · 별표 2)

- 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모든 가축의 축사 3ha까지 신고전용 허용
 - (현행) 양돈 · 양계 3ha, 그 외의 축종 1ha → (개정) 모두 3ha
- ②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현행) 1ha까지 면제, 1ha 초과부분 50% 감면 → (개정) 3ha까지 면제, 3ha 초과부분 50% 감면

(7)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범위 확대(안 제72조)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사실상 전면 위임
 - * (현행) 3ha~10ha → (개정) 3ha~20ha

3.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보완 등

(8)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제34조)

-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가공 · 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
 - ① 농산물 가공 · 처리시설의 규모 등 확대
 - * 미곡종합처리장(1ha → 3ha), 농산물 산지유통시설(1ha → 3ha)
 - ②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ha미만) 허용
 - ③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 허용

(9) 농업보호구역의 허용행위 조정(제35조)

- 관리지역 행위제한 및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수준을 조정
 - * 개정 농지법(법률 제7604호, 2005. 7. 21 공포)에서 종전의 제한행위 열거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
- 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 주말농원사업 · 관광농원사업에 필요한 시설
- ②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슈퍼마켓 · 의원 · 탁구장 · 동사무소 · 마을공회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 · 서점 · 체력단련장 · 사무소 · 사진관 · 게임방 등)
 - *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보호구역안에서도 허용

(10)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완화(제31조 내지 제33조 · 제36조 · 부칙 제8조)

- ①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대폭 완화
 - * 해제규모 1ha → 2ha로 확대, 시 · 도지사 직권해제 : 0 → 1ha미만
- ②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완료후 조정시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에 관한 특례를 부칙에 규정
 - * 조정기간(2006. 9. 1. ~ 2007. 6. 30)중에는 10ha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면적으로 적용
- ③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지적고시 근거를 규정
 -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농지의 定義 등 보완(안 제2조 · 제3조의2)
 - 조경 · 관상용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규정

톱밥 부가세 사후환급 (2006. 1. 22)

1. 적용시기 : 2006년 4월 1일부터

2. 부가세사후환급 방법

▶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자 : 농 · 수협 및 농업초생산협동조합

- 개인이 환급신청하는 경우 :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 · 수협 등이나 주소지 또는 거주지 소재 농 · 수협 등이 환급업무를 대행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환급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 · 수협 등이 환급업무를 대행
 -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도 가능함

▶ 환급신청 기한

- 농·수협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이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농·어민은 기자재 구입일의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구입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함)의 10일까지 관할 농·수협 등에 신청
-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구입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함)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농·수협 등이 환급대행하는 경우 >

- ① 농·어민은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협 등에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그 사본
 - 농·어민 확인서 : 매년 최초로 환급 신청시 제출
 - 축산업주업법인 및 어업주업법인 : 국세청장이 고시한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 또는 어업 주업법인확인서
 - 개인 : 동·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 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 제외)
- ② 농·수협 등은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
 - 환급신청자가 사업자인 농·어민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환급신청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 별도 규정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자인 농·어민이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시 >

- 법인인 경우 :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개인인 경우 :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동·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세무서의 환급기일 :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신청자에게 환급

▶ 환급대행자의 환급액 배분기한 및 환급대행수수료

- 농·수협 등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농·어민에게 지급
- 환급대행수수료
 - 1회 1인당 환급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환급세액 지급시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